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36
----------	------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2일 서상열 의원(찬성 35명)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서상열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한시적·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제공 및 향후 예산 확보 명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대한 조례상 지원 근거를 현행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 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 입법예고 (2024.2.14.~2.18.) 결과 : 의견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시장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과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사항 검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 위한 교육지원 (안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2호 신설)

- 개정안은 시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위해 의 학교생활 적응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가 사회·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

	<p>하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u></p> <p>2. <u>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u></p>
--	--

- 행정안전부¹⁾에 따르면 2022년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39,067명으로 2018년 32,93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외국인주민 자녀의 구성을 살펴보면, 2022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가 전체의 91%인 35,550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2022년 사이 18.5%(5,542명)가 늘어났으며, 귀화 및 외국국적의 자녀도 2018~2022년 사이 20.3%(595명) 늘어났음.

<2018~2022년 서울시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국내출생*	귀화 및 외국국적
2022년	39,067 (100)	35,550 (91.0)	3,517 (9.0)
2021년	38,376 (100)	34,895 (90.9)	3,481 (9.1)
2020년	37,517 (100)	34,220 (91.2)	3,297 (8.8)
2019년	36,532 (100)	33,500 (91.7)	3,032 (8.3)
2018년	32,930 (100)	30,008 (91.1)	2,922 (8.9)

*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1)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2023.11.),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조사(2022) 결과²⁾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자녀 양육 및 교육’(3.36점) 문제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경제활동 기회획득(3.32점),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주택 등 주거공간 문제가 그 뒤를 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행정서비스도 ‘자녀 학습 및 교육지원 서비스’라고 답하였음.
- 이에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문화 적응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6호³⁾ 및 제2항제8호⁴⁾에 근거하여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⁵⁾ 및 현행 조례 제18조⁶⁾에 근거하여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

2) 서울특별시(2023), 2022 서울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 141

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4)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개요>

- 시설명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前 서울온드림교육센터('15~'21.)
- 추진방식 : 민간위탁(시설형) ※ 신규위탁 : '22.1.1.~'24.12.31. (3년간)
※ '15~'21. 서울시(공간제공) + 현대차정몽구재단(재원조달) 민관협력사업 운영
- 운영단체 : (재)스마트교육재단
- 위치 :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인력현황 : 5명(센터장 1, 직원 4)
- 주요사업 :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교육, 상담, 맞춤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구분	사업내용
한국어지원	한국어 기본교육(초·중·고급), TOPIK 과정 등 운영
교육 지원	방과후 멘토링, 학교수업 보조 지원, 검정고시 교육, 이중언어 특화교육
맞춤 지원	상담(심리,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진로체험, 문화예술 동아리 등)
적응 지원	한국사회 이해교육, 또래문화 이해, 언어별 커뮤니티 지원 등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신설)

- 동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p><u>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u>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u></p>
--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7)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8)제1항과 제2항에서는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9)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규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7)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 2. 28., 2013. 3. 23., 2022. 5. 9.>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행정규칙)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0~5세 아동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사무처리 기준이나 절차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위 보건복지부 지침은 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보육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현행 법령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아동은 무상보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음.
- 현행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는 외국인주민(제1호)과 다문화가족(제2호)의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문화가족은 부모 또는 부나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 역시 동일한 국적을 갖게 되므로 이미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함.
- 다만,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주민인 경우 그 자녀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못한 상태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외국인주민 중 부모 또는 부나 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는 특별귀화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 과정 중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지원 대상의 국적 취득 여부>

용어	정의	국적 취득 여부	
		부모 또는 부나 모	자녀
외국인주민 (제2조제1호)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X	X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
다문화가족 (제2조제2호)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2제3호에 따라 2022년부터 유치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도 보육료 미지원 외국인 아동의 미등원 시 당장 보육료 수입에 차질을 입게 되는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4년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1억 1,667만원(8개월분)을 증액 편성한 바 있음.
- 다만 현재 보육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외국인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도록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2021년 8월 국가 재정 부담 문제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이며 다른 개별 사업도 외국인을 수급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권고를 거부하였으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동일한 상태임.

-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로 2025년부터 유보통합에 앞서 「정부조 직법」 개정법률[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일부개정]이 '24년 6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그 다음 단계로 지자체의 보육 사 무 또한 '24년에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재정까지 이관하는 계 획¹⁰⁾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여부는 가까운 시 일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교육청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임.

※ 집행부 의견 : 원안가결

현재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 능력향상 교육 지원(자치구 가족센터), 중도입국자녀 사회문화 적응 지원(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운영), 외국인 자녀 재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을 기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어 개 정안에 동의함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시장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 육·교육 지원과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에 대 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 서울시 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10)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7.28.),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안), p.6.

- 다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안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안 제7조의2제1항제2호)은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각각 자치구 가족센터 및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이미 현행 법령상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유치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육사무가 연내 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교육청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3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2일

발 의 자: 서상열 의원(1명)

찬 성 자: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옥재은,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종배, 이종태,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진혁, 황철규 의원(35
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한시적·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제공 및 향후 예산 확보 명분을 보강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대한 조례상 지원 근거를 현행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 ②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생략)</p> <p>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8. <u>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u></p> <p>9. ~ 12. (생략)</p> <p>③·④ (생략)</p> <p><u><신설></u></p>	<p>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8. ~ 11.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u>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①</u> 시장은 <u>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u>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u></p> <p>2. <u>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u></p> <p>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p>

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
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
용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②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담당부서 확인결과 현재 기추진사업(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4 참고)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 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안 제7조의2제3호1)의 경우 현재 기추진 사업으로 5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을 확대하여 전액 지원 시에는 연평균 2,233,34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2024년 서울시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관련 예산

(단위: 천원)

관련 조항	사업명	예산액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575,000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755,448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 ²⁾	1,116,670

주 :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관련 예산은 총 2,447,118천원임
자료 : 2024년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 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외국인아동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붙임1] 2024년 서울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예산 (본 개정안 제7조의2 관련)

□ 사업목적

-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에 기여
- 자조모임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정서 안정, 역량강화, 자녀 교육 및 생활정착 증진 도모

□ 사업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15세) 약 1,250명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방문지도
 - 추진방법 :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및 사업 수행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청소년(만 9세~24세) 및 학부모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맞춤형 진로지도 및 진학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 진로지도 프로그램 : 1:1 진로컨설팅, 찾아가는 그룹진로상담(진로컨설팅), 다문화 진로 상담사 교육 등
 - 진학지원 프로그램 : 학부모 진학설명회, 1:1 진학상담, 입시전략 워크숍, 다문화 진학 상담사 교육, 입시자료집 발간 등
 - 추진방법 : 공모로 분야별 전문단체 선정 및 사업 수행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및 선주민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교육비, 다과비, 체험비 등) 지원, 활동사례 발표회 실시(연 1회) 및 모국어 교육 지원 문화예술활동, 자기역량강화, 자녀성장지원, 봉사활동, 학부모 모임, 모국어교육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통해 구별 1~2개 자조모임 활동 지원

□ 향후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생활 적응 및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에 기여, 다문화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 325,000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1,250명*26,000원*10월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 지원 - 진학지원프로그램 40,000,000*1개 단체 - 진로지도프로그램 40,000,000원*1개단체	= 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 90,000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모임별 3,000,000*30개	= 102,600
	○ 다문화가족 아동 외국어(영어) 교육지원 80,000,000원*1개단체	= 80,000

자료 :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설명서 발취

[붙임2] 2024년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 (본 개정안 제7조의2 관련)

□ 사업목적

-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문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 육성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지원대상 :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 그 가족
- 사업수행주체 : (재)스마트교육재단(대표자: 감경철)
- 추진방법 : 민간위탁(시설형)
- 사업내용
 - 한국어 수준별 교육, TOPIK반 운영 등 한국어 지원
 - 방과후 멘토링, 학교수업 보조지원, 검정고시 교육, 이중언어 특화교육 등 교육지원
 - 상담(심리,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진로체험, 문화예술동아리 등) 등 맞춤지원
 - 한국사회 이해교육, 또래문화 이해, 언어별 커뮤니티 지원

□ 향후 기대효과

-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지원 및 글로벌 시민으로 육성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사무관리비	○ 시설 임차료	= 205,000
	○ 인건비	= 256,230
민간위탁금	○ 운영비	= 102,600
	○ 사업비	= 191,618

자료 :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설명서 발취

[붙임3] 2024년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본 개정안 제7조의2 관련)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센터소개	사업소개	연혁	조직도	센터일정	공지사항	대관안내
------	-------------	----	-----	------	------	------



교육지원사업

- 한국어교실: 기초반~고급반, TOPIK 대비반, 찾아가는 수업
- 검정고시 대비반: 초·중·고졸 학력취득 검정고시 대비
- 방과후 학습 멘토링: 부진 교과목 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상담사업

- 다국어상담 서비스
-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탐색 특강, 직접 체험 및 현장 방문 등
- 가족관계형성 프로그램: 부모교육, 학부모 반상회, 가족관계 개선 캠프
- 청소년소통회의: 센터 이용 청소년 자조모임 형식의 회의 운영



문화교류사업

- 문화예술동아리: 음악, 미술, 댄스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 내외국인 청소년이 상호간의 또래 문화 이해 및 체험
-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국문화 체험 및 학생 단합 야외 프로그램
- 송년발표회

자료 : 서울외국인포털(<https://global.seoul.go.kr/>)

[붙임4] 2024년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예산 (본 개정안 제7조의2 관련)

사업목적

-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 지원

사업내용

- 외국인아동재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시:구=5:5)
 - 재원 외국인 유아 보육료의 50%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

향후 기대효과

- 어린이집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 및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
-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 및 출산율 제고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외국인아동재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 1,116,670
	- 정부지원, 서울형어린이집	= 607,040
	140,000원*1,084명*8개월*0.5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509,630
	▷ 3세	232,998
	241,700*241명*8개월*0.	
	▷ 4~5세	276,632
	231,300원*299명*8개월*0.5	

자료 :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설명서 발췌